

소규모 합병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 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(주)탑프리시전과의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-- 아 래 ---

1. 합병방법 : (주)탑엔지니어링이 (주)탑프리시전을 흡수합병
 2. 합병비율 : (주)탑엔지니어링 : (주)탑프리시전 1 : 0
 3. 소멸회사의 현황:
 - A. 상호 : (주)탑프리시전
 - B. 본사 소재지 :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53-17
 4. 합병기일 : 2020년 06월 29일
 5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
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A. 행사절차: 2020년 5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- B. 제출기간: 2020년 5월 13일 ~ 2020년 5월 27일
 - C.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: 2020년 5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74(삼평동 616-1) (주)탑엔지니어링 자금팀에 제출
 - 2) 실질주주: 2020년 5월 2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- ※ 실질주주의 경우 거래 증권회사에 따라 증권 회사를 통한 반대의사표시 행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7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 8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본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주)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탑엔지니어링과 (주)탑프리시전과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
주 주 번 호	주 주 명
소유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

2020년 월 일

성명:

주민등록번호:

주소:

2020년 5월 13일

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

대표이사 김 원 남, 류 도 현